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계약서 (시설급여)



공정거래위원회
표준약관 제10068호
(2014. 9. 19. 개정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(인)	등 급 (인정번호)	등급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	기 타	☐ 일반 ☐ 12%경감대상자 ☐ 8%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양평네스트요양원	시설종류	노인요양시설
	시설장 성명	김창원	연락처	031) 772-1976
	주 소	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189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'갑'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이동전화)
	주 소			

제1조 【 목 적 】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

양평네스트요양원
개인생활실 프리미엄 케어

- ⑥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매년 매월 초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일 납부하기로 한다.(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 (31일)

구 분		본인부담금20%	본인부담금12%	본인부담금8%
요양 급여	1등급(90,450원/일)	560,790원	336,470원	224,310원
	2등급(83,910원/일)	520,240원	312,140원	208,090원
	3~5등급(79,240원/일)	491,280원	294,770원	196,510원
비급여	상급침실이용료(1일)	20,000원(2인실) / 40,000원(1인실)		
	식재료비(1일)	13,500(₩4,500×3)		
	간식비(1일)	1,500		
	이/미용료등	이.미용사 초빙비용(컷트,파마,염색등)무료		

※ 31일기준 적용 후 퇴소시 정산하여 환급하기로 한다.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분	시설급여
일반	20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상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 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 ~ 12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

◇ 세부내역: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

진료구분	일반20%	감경12%	감경8%	기초생활수급자
초진비용(17,610)	3,520원	2,110원	1,400원	0원
재진비용(12,590)	2,510원	1,510원	1,000원	0원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.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.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.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 ‘갑’ 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 의 의무

- ㉠ 월 이용료 납부
- 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- 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- 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- 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 의 의무

- ㉦ ‘갑’ 의 건강관리 협조
- ㉧ ‘갑’ 의 신변이상을 ‘병’ 에게 즉시 연락
- ㉨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- ㉩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㉪ 기타 ‘갑’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

③ ‘병’의 의무

- ㉠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㉡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- 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- ㉣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- 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‘갑’의 해지

- ㉠ ‘갑’과 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의 해지

- ㉠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㉢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 【 퇴소 】

- ① ‘을’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과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 ‘을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(또는 ‘병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

제7조 【 입소물품 】 ‘갑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- ① ‘갑’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18:00까지로 한다
(단 ‘갑’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- ② ‘갑’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‘을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이나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‘갑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

제9조 【 시설관리 】

- ① ‘을’은 보건, 위생, 방법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 【 건강관리 】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‘을’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⑤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‘을’은 ‘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없이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- ⑦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1조 【 시설물 배상 】

- ① ‘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‘갑’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을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【 위급시 조치 】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

- 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 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.
- ㉡ 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- ㉢ 임종(사망) 시 ‘을’ 과 ‘병’ 협의 하에 검안 의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‘병’ 이 부담한다.

② 무연고자

- 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을’ 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- ㉡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㉢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- ① ‘을’ 은 1일 3식 및 간식을 ‘갑’ 에게 제공하며, ‘갑’ 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‘을’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‘갑’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 ‘갑’ 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 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을’ 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- ①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‘갑’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- ④ ‘갑’ 은 ‘을’ 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 배상책임 】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- ㉠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㉣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


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은 ‘을’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
㉡ 을’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㉢ ‘갑’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㉣ ‘갑’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작성하는 [보호자 입소계약 동의 및 (설명)확인서] , 민법, 기타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년 월 일

(계약자) ‘갑’ 이용자

 ‘을’ 시설장

 ‘병’ 대리인(보호자)

김창원



(인)

(인)



보호자 입소계약 동의 및 (설명)확인서

※본 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, 이에 관련된 모든 운영 지침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. 아래 각 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확인에 동의 표시(✓)하여 주십시오.

제1조 수급자의 권리 ① 모든 어르신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의 권리를 갖는다. ②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. ③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. ④ 종교 생활, 문화생활,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. ⑤ 모든 생활 노인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 ⑥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, 치료에 대한 알권리를 갖는다. ⑦ 어르신은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 ⑧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⑨ 노인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 ⑩ 모든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 ⑪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. 위의 수급자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동의확인 수급자 권리 동의 ☐
제2조 면회 규정 준수 ① 면회 제한 시간 : 식사시간(12:00~13:00/17:00~18:00) 일과 종료 시간(17:30 이후) ② 장소는 면회실을 이용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(외상, 회복중)외 에는 생활실 출입은 불가합니다. ③ 생활실 내 면회는 20분 이내입니다. 위의 면회규정 준수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면회 규정 준수 동의 ☐
제3조 입소비용 납부 ① 입소비용(기타 청구 대금) 납부는 매월 초 5일까지 입소비용을 선납 하여야 합니다. 위의 입소비용 납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입소비용 납부동의 ☐
제4조 장기요양 등급갱신 및 신청 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갱신은 보호자가 주관하며, 시설은 보조하여 협조합니다. ② 장기요양 등급 최종 판정을 받은 후 인정서 3부(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, 복지용구 확인서)의 사본을 본 요양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③ 단, 보호자는 공단으로부터 등급갱신 및 신청에 대한 통보를 받고 갱신하지 않아 등급 기간이 만료 될 경우 미등급으로 정산하여 입소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위의 장기요양 등급갱신 및 신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등급갱신 신청동의 ☐
제5조 입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배상은 보호자(입소자) 책임 ① 시설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 및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나, 본인 스스로 배회하다 낙상 또는 골절사고 발생 시 ② 야간에 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고 이동을 해야 하나, 본인 스스로 배회하다 낙상 또는 골절사고 발생 시 ③ 본인 스스로 배회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골절 또는 낙상사고 발생 시 ④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낙상, 골절 또는 기타 상해를 입는 경우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입니다. ⑤ 다만,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18조(배상책임)경우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. 위의 입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보호자(입소자)책임에 동의합니다.	고의과실 배상동의 ☐



제6조 외출·외박 및 식사/간식비(상급침실료 포함),개인 물품반입 ① 외박은 주 계약자의 신청 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회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. ② 외박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되는 본인 부담금은 50% 내셔야 합니다. ③ 외출·외박시 비급여에 해당되는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1개월 전 정원수에 비례하여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음으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. ↳ 단, 1개월 전 외박을 신청하였을 경우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공제합니다. (16.2.23보건복지부회신) ④ 특별식(경관식 급식비 등)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할 경우 비용을 추가 부담합니다. ⑤ 상급침실료는 비급여로 외박 시 그 자리가 계속 보존됨에 따라 공제해 드리지 않습니다. ⑥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요양원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으나, 훼손, 망실시는 요양원에서 제공한 물품에 한하여 요양원에서 책임을 지고, 개인물품은 본인(보호자)이 책임을 집니다. 위의 외출·외박 및 식재료비·간식비, 상급침실료, 물품반입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동의확인 외출·외박,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동의 ☐
제7조 퇴소규정 ① 퇴소의사가 있는 경우, 주계약자(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서명한 보호자로 한정)는 퇴소 15일 전 반드시 서면(전화)으로 “퇴소신청서”(퇴소의사)를 제출(통보)하여야 합니다. ② 퇴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퇴소가 진행 됩니다. ※ 퇴소 신청서 제출 ⇨ 직원회의(예약 대기자 통보) ⇨ 시설장(원장)보고/결재 ⇨ 퇴소 위의 퇴소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퇴소규정 동의 ☐
제8조 노인인권보호 지침 제공/입소자 신체 제어(노인 인권보호 지침 제공)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-요양원에서 정한 긴급하고, 어쩔 수 없는 최소한 범위로 한시적 신체 제어 설명 ① 입소자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자해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(절박성) ② 신체제어/행동제한 등 대체 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는 경우(비 대체성) - 침상난간 올리기, 휠체어 안전벨트, 휠체어 밥상설치, 취침 시 가슴보호대 사용에 동의합니다, ③ 신체제어 또는 기타 행동이 일시적인 것일 경우(일시성) ④ 단, 해당사유가 소멸 또는 현저히 완하 될 경우 지체없이 신체 제어 해제(관련근거 기록 유지) ⑤ 지속적/주기적 신체 제어 사유 발생 시는 사전 구체적 내용으로 보호자와 서면 동의서 작성 후 시행 입소자의 노인인권보호지침과 신체제어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노인인권 지침제공 신체제어 동의 ☐
제9조 건강관리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충제 복용, 독감예방 접종, 감염병 진단 및 정기검진(당뇨, 골다공증 검사)은 모든 입소자에게 매년 공통 적용되며, 그 비용은 비급여로 청구됩니다. 건강관리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건강관리 동의 ☐



제10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정보 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 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 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 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생년월일)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 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(건강정보)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□
제11조 임종 절차 ① 임종(사망)시 검안의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. 임종시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	임종절차 동의 □
제12조 계약자 본인은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 약관 계약서 부분을 발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부본 발급 동의 □
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, 동의합니다. (보호자 자필 기록) 20 년 월 일 보호자 (주계약자) : _____ (인) 설명자, 시설장(대행자) : 김창원 (인)	

